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개발·관리·운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8701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국가사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항만 지정 및 항만배후단지 이용자의 선수금 환불 담보 제도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관리항만 사무의 시·도 이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등)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를 포함한 관리청*으로 전환하고, 토지·항만시설 귀속주체에 시·도를 포함토록 하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한 사무가 지방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조항을 정비함

*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서, 국가관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관리항은 시·도지사를 지칭(항만법 제2조제6호)

나. 신규 연안항 지정 및 항명 변경(안 별표1, 별표3)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을 각각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비인항과 신마항의 명칭을 각각 마량진항, 강진항으로 변경함.

다. 항만배후단지 조성토지 분양·임대 제도개선(안 제64조)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분양·임대하려는 경우 일반경쟁입찰 방법 이외에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시에도 사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한 처분계획서의 토지가격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규제 검토 예정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개 의(開議)하고”를 “개 의하고”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그렇지 않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을 “항만개발사업은”으로, “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이상으로의 변경으”를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가”를 각각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중 “절차에 관해서”를 “절차”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관리청”으로 한다.

제37조제4항 후단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을 “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과”를 “관리청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를 “관리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을 “관리청이 아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일체”를 “전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전자문서에 의한”을 “전자문서를 이용한”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1항 에”를 “법 제51조제1항에”로 한다.

제56조제4호 중 “국가”를 “국가 또는 시·도”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공고일 30일”을 “조성토지 취득 후 30일이 지나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항”을 “사항(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 가격이 제55조제1항 제8호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의

토지가격보다 100분의 10 이상 높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가격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한다.

제75조제2호 본문 중 “제세공과금”을 “각종 세금과 공과금”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지하여”를 “환지해”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가설건축물”을 “가설(假設)건축물”로 한다.

제93조제1항제6호 중 “법 제10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7의2. 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를 “3년”으로, “말한다)”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도목의 수상구역란 전단 중 “58.69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북위 33도 14분 38.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에서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1.74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4분 58.73초 지점, 북위 33도 14분 30.81초, 동경 126도 25분 01.73초 지점 및 북위 33도 14분 34.81초, 동경 126도 25분 06.73초”를 “58.69초”로 하고, 같은 표 별표 1 제2호다목부터 너

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더목까지, 같은 호 러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마목(중전의 라목) 및 하목(중전의 파목)의 향만명란 중 “비인향” 및 “신마향”을 각각 “마량진향” 및 “강진향”으로 한다.

다. 격렬비 열도향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북위 36도 37분 32초, 동경 125도 33분 41초 지점에서 북위 36도 37분 32초, 동경 125도 33분 53초 지점, 북위 36도 37분 21초, 동경 125도 33분 53초 지점 및 북위 36도 37분 21초, 동경 125도 33분 40초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러. 진촌향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	북위 34도 50분 31초, 동경 128도 13분 12초 지점에서 북위 34도 50분 31초, 동경 128도 13분 31초 지점을 연결한 선 내의 해면

별표 3 제1호 중 “(11개)”를 “(12개)”로 하고, 같은 란 제1호의 향만명란 중 “연평도향”을 “연평도향, 격렬비열도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18개)”를 “(19개)”로 하고, 같은 란 제2호의 향만명란 중 “비인향”을 “마량진향”으로, 같은 란 중 “신마향, 녹동신향, 나로도향”을 “강진향, 녹동신향, 나로도향, 진촌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중 “국가 귀속”을 “국가 또는 시·도 귀속”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7 제2호하목 위반행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시·도지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7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제13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중 “「항만법」 제32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10호에”를 “같은 조 제11호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항만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지방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 의(開議)</u>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⑦ (생략)	제8조(지방항만심의회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개 의 하 고</u> -----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중앙심의회, 분과심의회 및 지방심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u>그 령 지</u> 않는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 ----- ----- ----- ----- ----. ----- ----- ----- <u>지</u> <u>급 하 지</u> 않는다.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제13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4. (생략)

5. 제14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결과(법 제9조제3항제5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
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또
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생략)

③·④ (생략)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9조제3항제5호에 해당
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
이라 한다)을 통해 타당성조사
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의 타당
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통
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자와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
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1. ~ 4. (현행과 같음)

5. -----

----- 국
가 또는 시·도-----

6.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항만개발사업은 -----

----- 타당
성을 -----.

③ -----

-----.

1. 국가 또는 시·도-----

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전까지 실시

2.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 또는 변경(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에서 500억원 이상으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허가 신청 전까지 실시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법 제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 4. (생략)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 ③ (생략)

----- 관리청-----

2. 국가 또는 시·도-----

-----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5조(항만개발사업 변경허가의 대상) -----

1. -----

----- 관리청-----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비관리청이 전용(專用)할 목
적으로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 이 경우 비관리청
의 자회사(「상법」 제342조
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
한다) 또는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및 사용하기 위해 전단에 따
라 비관리청에 귀속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관리청이 그 시설을 전용하
는 것으로 본다.

가. ~ 다. (생략)

4. ~ 8. (생략)

⑤ (생략)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

-----.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2호-----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8.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총사업비의 범위) ① ----

는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
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
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
용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1. ~ 5. (생략)

6. 건설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에 대한 건설이자(이자율은 사업기간 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정기예금 수신금리와 대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말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제외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6.

.

관리청

.

7.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및 항만시
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을 말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산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
은 포함하지 않는다.

1.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토지
및 항만시설의 개발사업과 관
련된 비용

2. ~ 4. (생략)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
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
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
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
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
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
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7. -----

-- 국가 또는 시·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국가 또는 시·도-----

2. ~ 4. (현행과 같음)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

-----.

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
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1. 국가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
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 사용료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
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의 매각 가격의 산정 절차에 관
해서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법 제
1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으로,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은 “비관리청이 토지의
매도를 청구한 날”로 본다.

제28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법 제19조제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

-----.

1. 국가 또는 시·도-----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매도청구 대상 토지의 범
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절차-----

-----.

-----.

제28조(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등) ① -----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토지 및 항만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제24조제4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및 제8호(투기 목적으로 개발할 우려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따른 항만시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비관리청이 토지·항만시설을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생략)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을 수립·시행

-----.

1. (현행과 같음)

2. -----

----- 관리청 -----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 관리청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해운법」 및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아 항만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항만사업자”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항만사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 4.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

-----.

----- 경영하는 -----

-----.

제44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

----- 관리청에 제출(전자문

서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관리청과 -----

----- 관리청

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항만시설운영자(법 제104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임대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 사용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

예) _____

 ____.

[illegible]

④

전부

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⑤ (생략)

⑥ 임대계약자는 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승낙을 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항만시설운영자
에게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
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
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
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1
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전자문서를 이용한-----
-----.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
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51
조제1항에 -----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
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
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와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12. (생략)

② ~ ⑦ (생략)

제56조(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
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
만시설 중 공공시설용지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방
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
2조제1항에 따라 조성하여 취득
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조성
토지”라 한다)를 분양 또는 임
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분양·임대 계
획서를 작성하여 제3항에 따른
공고일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

-----.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공공시설) -----

-----.

1. ~ 3. (현행과 같음)

4. -----
국가 또는 시·도-----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임대 방
법 등) ① -----

----- 조성토지 취득
후 30일이 지나기 -----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략)

5. 조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
와 관련된 공고의 방법 및 공
고 사항

6.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70조(입주자격) ① ~ ⑤ (생략)

⑥ 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출입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 4. (현행과 같음)

5. -----

-- 사항(일반경쟁입찰의 방법
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토지
의 분양 또는 임대 가격이 제55
조제1항제8호의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
한 계획서의 토지가격보다 100
분의 10 이상 높을 경우 해양수
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게 조
성토지의 분양 또는 임대가격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입주자격) ① ~ ⑤ (현행
과 같음)

⑥ -----

----- 해당하는 사업

을 영위하는 자 중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
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
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 7. (생략)

⑦ ~ ⑩ (생략)

⑪ 관리기관은 제9항에 따른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지침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
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입주하
게 할 수 있다.

제75조(이자 및 비용) 법 제74조
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
다.

1. (생략)

2. 양도할 1종 항만배후단지 토
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를 취득
한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로 추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생략)

을 경영하는 자 -----

-----.

1. ~ 7. (현행과 같음)

⑦ ~ ⑩ (현행과 같음)

⑪ ----- 제10항-----

----- 경영하는 -----

-----.

제75조(이자 및 비용) -----

-----.

1. (현행과 같음)

2. -----

----- 각종 세금과 공과금. -----

-----.

3. (현행과 같음)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환지 하여 주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89조(행위 제한 등) ①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 8. (생략)

②·③ (생략)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에 관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① -----

----- 환지
해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행위 제한 등) ① -----

-----.

1. -----

-----가설(假設)건축물-----

--

2.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권한의 위임) ① -----

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5. (생략)

6. 법 제10조제1항 · 제2항 ·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공고, 승인, 변경승인, 신고의 수리,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7. (생략)

<신 설>

8. ~ 50.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구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항만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0조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및 제7항--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항
만개발사업의 준공기한 연기

8. ~ 50. (현행과 같음)

② -----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for handwriting practice, consisting of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line, and a solid bottom line.

1. (현행과 같음)

<작 제>

<u>운영세칙의 제정·운영</u> 3. <u>법 제25조에 따른 항만시설</u> <u>관리권의 등록·변경등록</u> 4. <u>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u> <u>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통제,</u> <u>출입통제의 해제 및 공고</u> 5. <u>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항만</u> <u>시설의 사용허가</u> 6. (생략) 제9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 준으로 <u>3년마다</u>(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 (생략)	<u><삭 제></u> <u><삭 제></u>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제95조(규제의 재검토) ----- ----- ----- ----- <u>3년</u>----- ----- -- <u>말한다)마다</u> ----- -----. 1.·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920